

서울특별시 성북구
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문화체육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9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6년 4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(의안번호 제2025-312호)에 따라 공공 도서관의 제적 및 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 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에 폐기 또는 제적 자료의 무상배부 규정 신설

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서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26. 2. 26.(목) ~ 3. 18.(수)(20일간)
- 방 법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- 결 과: 의견 없음

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지

3) 비용추계 등 자료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아동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,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8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 적되는 자료는 기관, 단체 및 개 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 다.</u>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제2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성자

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장 임영근